



충북대학교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출석(공결)인정 절차 변경 안내

11.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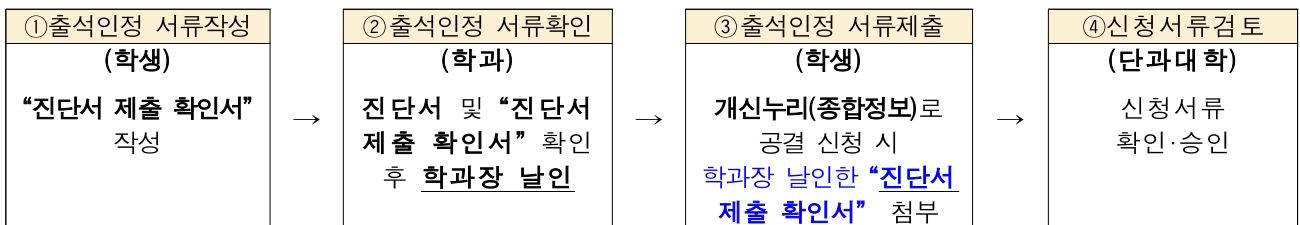
가.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(공결승인)

나. 학사지원과-5144(2024.06.05.) 「출석(공결)인정 절차 및 기간 변경 안내」

2.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각 대학 소속 학생의 수업 공결 처리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절차 변경 내용(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)

□ 변경절차



4. 안내사항

-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, “진단서 제출 확인서”만 첨부
-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
-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학과·단과대학 자체 보관 불가

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부. 끝.

학사지원과장

수신자 학1-15, 원1-10, 정보화본부장

주무관

김아리

수업팀장

유수경

학사지원과장

전결
2024.06.12.
연장흠

협조자

시행 학사지원과-5275

(2024.06.12.) 접수

약학대학-3723

(2024.06.12.)

우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(개신동, 충북대학교)

/ <http://www.chungbuk.ac.kr>

전화번호 043-261-2015 팩스번호

/ dkfl2217@chungbuk.ac.kr

/ 공개